

2025년 농산업 해외박람회 개별 참가기업 모집 공고

□ 모집개요

- 개요 : 기업이 농산업 해외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
 -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 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박람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
- 지원 대상 : 8개 품목* 농기자재 수출(예정)기업 20개사 내외
 - *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 사업지원 제외대상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¹⁾ 참고
- 지원 내용 : 기업 당 1회 최대 600만원(국비 70%, 자부담 30%)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
 -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최종 정산금액 기준의 50%까지 지원
- 추진일정 : 참가기업 모집(1.20~2.7) → 심사(2.12) → 선정통보(2.17) → 정산(12.6)
 -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 한도	최대 600만원 한도 / 선정기업 당 1회 참가비용(지원비율 70%)
지원 비율	중소·중견 기업 70%, 대기업 50%
지원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해외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오프라인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 등록비, 주최측 제공 마케팅 비용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 필요 비용 ○ 전시물품 관련 운송·통관비 (편도 기준, 정식 전시품 통관에 한함) ○ 보험료(안전, 상해 등) / 20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람회 주최측에서 직접 부과하는 필수보험에 한함 * 부스 운영 시 발생하는 안전 상해 등의 보험에 한하며 여행자 보험은 해당 없음 ○ 통역비(박람회 기간 1인/1일당) * 국가별 지원기준 별첨 참고 □ 온라인 해외 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참가등록비 등 온라인 박람회 참가 비용

※ 지원제외 항목

지원 제외 항목

- 전시회 간접비용 :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및 출력물 제작, 인쇄비(디자인, 그래픽, 브로셔 등)
- 전시물품 반송 비용, 전시품 운송 초과비용(1부스 당 1CBM 지원기준)
- 핸드캐리 전시물품 : 개인 수화물, 운송사의 핸드캐리 운송비
- 참가신청 수수료 :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협단체, 민간 에이전트 수수료
- 선정기업에 사전 안내된 증빙서류가 미비한 비용

□ 신청 및 발표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025. 2. 7(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agroex.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공고 및 참가 신청 → 해외 개별박람회 → 신청하기)

○ 신청서류 :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등록

구분	내 용
필요 서류	<p>※ 참가 신청, 전시 품목 상세 내용 등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입력</p> <p>※ 아래 서류는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첨부</p> <p>① 사업계획서 1부</p> <p>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p> <p>③ 참가 서약서 1부</p> <p>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⑤ 온라인 -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p> <p>* 최근 3개년('21~'23)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p> <p>** 동의 방법 [별첨]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Tmy Data)] 참고</p> <p>※ 정보제공 미동의 시 계량점수 해당 평가항목(수출잠재력, 수출액) 0점 처리</p> <p>⑥ 계량평가 반영 증빙자료(선택)</p>

○ 심사항목 : **【별첨2】** 참조

○ 선정결과 : 2025. 2. 17.(월),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 확인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 → 지원내역) 및 개별 메일 안내

□ 지원금 교부 절차

- 지원금 교부 절차 : 先 전시회 참가(비용 완납), 後 지원금 교부
 - 개별참가 후 1개월 이내에 사후정산 증빙서류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
- * 사후정산 관련 서류 등 안내사항은 선정기업에 한하여 별도 교육 예정

□ 유의사항

-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용도 이외에 외부공개할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결과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및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사업 책임자, 대표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지원 사업에서 제외
-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
-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 원본 제출이 요구된 서류에 대해 원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출 증빙서류가 위변조 또는 허위 서류로 판명될 경우
 - 지원금 정산 시, 결과보고서 및 관련 구비서류 미제출업체, 박람회 참가규정 불이행 등으로 인해 문제를 야기한 경우
-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 2025. 12. 5(금) 18:00시까지
 - 신청한 해외박람회 개최 및 폐막일이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 2025. 6. 28(금)까지 담당자에 별도 문의 필수
 - 최종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061-338-5748, smart_ag@ekr.or.kr)

【별첨 1】 사업 지원제외대상

- > **농기자재 이외 품목(공산품 등) 해당 기업**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별첨 2】 지원업체 선정평가 항목

구분	항목	평가내용	배점	세부평가내용				
계량 (45)	제품 경쟁력	- 국내외 제품 인증·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 (PCT 출원, CE인증 등)	10	개당 5점(최대 10점)				
	수출 성장기업	- 전년(2023)대비 2024년 수출액 증가율 * '24년 신규 수출 : 9점 ** '23년, '24년 모두 수출실적 0 : 6점	15	50% 이상	10~50% 미만	0~10% 미만	0% 미만	
				15	12	9	6	
	수출실적	- 전년도 수출실적	10	20만불 이상	10~20만 불 미만	5~10만불 미만	5만불 미만	
10				8	6	4		
수출 준비도	- 외국어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보유 여부	10	2개 이상	1개		없음		
			10	5		0		
비계량 (50)	수출역량	- 제품 특성 및 경쟁력, 비계량 수출성과(MOU 등)	5	A (10)	B (9)	C (8)	D (7)	E (6)
	사업계획	- 사업 추진 배경, 계획 및 목표 등	30	A (30)	B (27)	C (24)	D (21)	E (18)
	발전가능성	- 사업을 통한 수출 확대 및 발전 계획	15	A (15)	B (13.5)	C (12)	D (10.5)	E (9)
가산점 (5)	① (혁신) 창업초기기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개시일 3년 미만) 또는 벤처기업(중소기업 창업 후 사업 개시일 7년 미만),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기업		3	※ 1. 가산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항목 내 중복으로 가산하지 않음 2. 관련 증빙을 첨부해야 하며, 허위정보 및 성과 기재 시 0점 처리 * 가점서류 사본 제출 : 농기자재 관련 신기술(NET) 인증서, 현지 실증(테스트베드) 완료 증빙(현지 공신력 있는 실증 관련 기관의 직인이 포함된 공식 실증 결과보고서 등), 벤처기업 인증서, 7년 미만 신생기업(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등				
	② (사업성과 제고) 현지 실증(테스트베드)지원 사업 수행 완료 기업('22~'24, 3개년 인정), 2024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기업, 2024년 K-Food+ 수출탑 수상기업 * (농기자재 수출기업육성) 관련 협회 추천기업		5					

<참고>

- 증빙서류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 불인정
- 계량 평가의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mydata에 조회되는 실적만 반영함
(※Tmydata 정보 제공 미동의시 수출성장기업 및 수출실적 항목 평가 0점 처리)
- 2024년도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기업의 경우, 신청 시 우선 선발
- 평가방법 : (계량) 제출서류 기반 운영기관 내부평가, (비계량) 수출 전문 평가위원회를 통한 외부평가
-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인증 외 타분야 (기업경영 등) 인증 불인정
(ex.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등 미적용)

【별첨 3】 별칙 및 의무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가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종합박람회 및 개별박람회 사업 참여 제한
 -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받는 경우
 - 2.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허위 보고한 경우
 - 3. 기타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②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
- ③ 박람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업체가 박람회 참가를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박람회 참가신청부터 다음 각 호의 패널티 및 감점 부여 가능
 - 1. 종합박람회 : 사전설명회 후 참가 포기, 박람회 불참 시 당해연도 잔여박람회 참가를 취소하고 참가비를 환급하지 않으며 차년도 박람회 참여를 제한
 - 2. 개별박람회 : 사업선정 후 참가포기 시 차년도 개별박람회 및 종합박람회 참여 제한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유 발생 시 다음 차년도 박람회 사업참여 제한
 - 1. 박람회 현장에서 불성실한 부스 운영 및 박람회 운영요원의 정당한 현장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2.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관련 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 3.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박람회 주최사, 장치 등 박람회 관련 업체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고 비용납부에 응하지 않은 경우
 - 4. 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전시품 운송에 협조하지 않는 등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해외 개별박람회

사업 계획서

〈작성 지침〉

- ◆ (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사진, 그림, 도표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
 - 실무적 차원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시
 - ◆ (형식) 설명식 혹은 개조식 등 자유형식, 분량은 **7p 내**로 한다.
제목 아래의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심사평가 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크기 작성요령 참조, 줄간격 150%)
- ※ 가. 제출한 내용은 선정평가 이외에 사용하지 않음
나. 제한 분량을 넘어갈 시 1p당 5점 감점
다. 제출 시 작성 지침은 삭제

1 수출역량(5)

(※ 작성요령)

- 차별화된 제품 특성 및 경쟁력, 비가시적 수출 성과(MOU 등) 기술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맑은고딕 12pt

2 사업계획(30)

(※ 작성요령)

- 기업의 대내·외적 수출 환경, 사례 추진 배경 및 목적, 기업의 목표 및 비전 의지 기술
- 해당 사업을 통한 주요 추진 내용 기술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맑은고딕 12pt

3 발전가능성(15)

(※ 작성요령)

- 해당사업을 통한 향후 수출확대 및 지속적인 수출가능성을 담은 계획 기술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5pt

- 휴먼명조 14pt

* 맑은고딕 12pt

해외박람회 참가 서약서

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박람회 참가안내"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귀 공사 주관으로 참가(개최)하는 전시회에 한국관 참가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다음 사항에 충실할 것을 약속하오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박람회 참가성과 거양에 적극 노력하고 박람회 출장 기간 중 현지법 준수는 물론 국위손상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2. 당사의 현지 파견 직원은 회기 중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위해 귀 공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상담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한다.
3. 당사는 귀 공사에 발송 의뢰한 전시품을 전시회 개막전 귀 공사로부터 인수받아 당사 책임 하에 회기 중 관리함은 물론 현지매각 또는 반송에 따른 사후처리도 당사 부담으로 성실히 수행한다.
4. 당사 전시품과 관련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당사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당사는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전시회 참가를 포기할 경우 기납부 참가 신청금을 포함한 참가비 전액의 환불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 당사는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항을 준수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외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참가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는다. 국고 및 지방비 등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지원금을 전액 환불하며 향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6. 당사는 귀 공사의 지원사항 이외에 전시회 참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항은 요구하지 않는다.
7. 당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기와 같은 불성실 행위를 한 경우, 단체참가 전시회 선정제한 등 귀 공사의 소정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 전시회에 불참한 경우
 - 기업참가비 체납 또는 미납한 경우
 - 직매가 허용되지 않는 전시회에서 직매를 강행한 경우
 - 자사부스를 임의로 재 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귀 공사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인감)

한국농어촌공사 귀 중